



---

# 충북대학교 강사 안내 자료

---

2022. 9.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1. 개요 -----	1
2. 임용기간 -----	1
3. 담당업무 및 교수시간 -----	1
4. 임금(인건비) -----	2
5. 면직 사유 -----	2
6. 의원면직(사직원 제출) -----	2
7. 강사 신규채용 흐름도 -----	3
8. 강사 재임용 흐름도 -----	4
9. 재임용 평가항목 -----	5
10. 수업품질개선보고서(CQI) -----	5
11. 대학에서 정한 의무교육 -----	6
12. 강사 자율 참여 교육 -----	6
13. 강사의 출장 처리 -----	7
14. 사회보험 가입과 퇴직금 -----	7
15. 전업 · 비전업 강사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의 제출 -----	7
16. 계약기간 만료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 -----	7
17.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및 외부강의 등 신고 -----	8
18. 증명서 발급 -----	8
19. 신분증 발급 안내 -----	9
20. 정기차량 등록신청 -----	9
21. 기타사항 -----	10
22. 단과대학(부서)별 강사실 현황 -----	10
23. 업무 관련 부서별 전화번호 -----	11
[서식1] 사직원 -----	12
[서식2] 보안서약서 -----	13
[서식3]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14
[서식4] 휴직원 -----	15
[서식5] 복직원 -----	16
[서식6] 강사 초과 강의 허용 신청서 -----	17
[서식7]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	18



# 충북대학교 강사 안내 자료

## 1. 개 요

- 직명: 강사 (학교에 두는 “교원” 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 자격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일부 특수분야 제외)
  - 만 65세 미만
  - ※ 공개채용 심사를 통과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자격인정(동의)을 받은 사람

## 2. 임용기간

- 공개채용을 통해 1년 이상 임용. 신규채용 후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1년 미만 임용 가능 대상은 강사 임용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1년 미만 임용 가능 대상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 1년 이상의 연구년, 휴직,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를 위해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 재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공고 및 계약서에 재임용이 보장되지 않음을 명시

## 3. 담당업무 및 교수시간

- 담당업무
  - 강의, 이와 연관되는 학사업무(강의계획 작성, 성적평가 등) 담당
  - ※ 강사에게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MT 등에 따른 학생현장지도, 입시 업무 등의 별도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 강의(교수)시간

- 매학기 6시간/주 이하 원칙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9시까지 총장의 승인 후 강의 가능

(서식6. 강사초과강의 허용신청서)

○ 1강좌의 담당 강의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실험·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 4. 임금(인건비)

○ 인건비의 구성: 강의료 + 방학 중 임금

- 강의료: 강의에 따른 인건비

- 방학 중 임금: 방학 중 실질근로에 따른 인건비

※ 실질근로: 강의계획 1주, 성적평가 등 강의마무리 1주

○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학사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함

#### 5. 면직 사유

○ 신규채용, 재임용 평가 시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강의)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 성적입력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경우

○ 소속 학과 또는 조직이 폐지된 경우

○ 품위손상의 정도가 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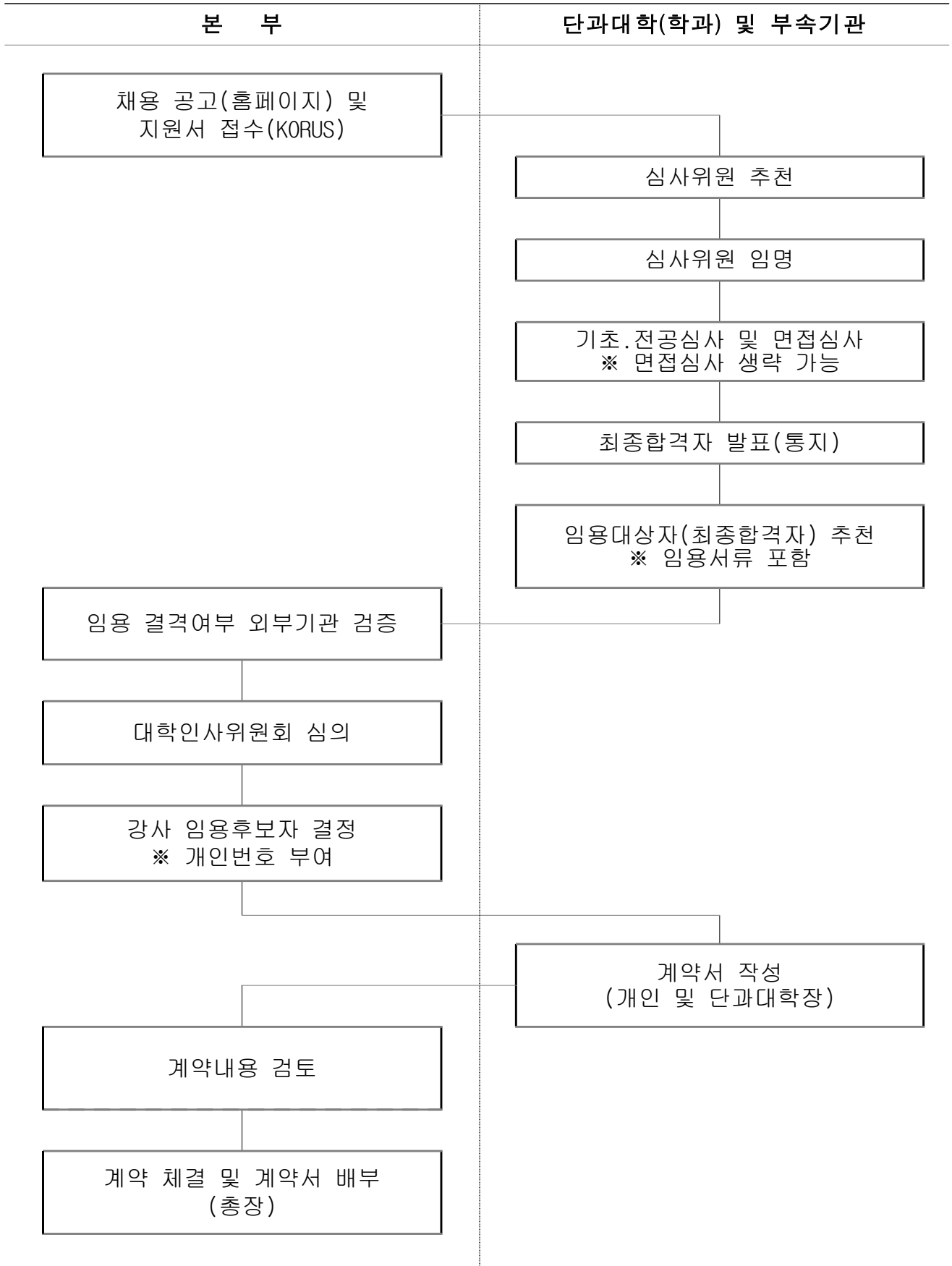
○ 임용기간 중 만65세가 되는 강사 (만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

#### 6. 의원면직 (사직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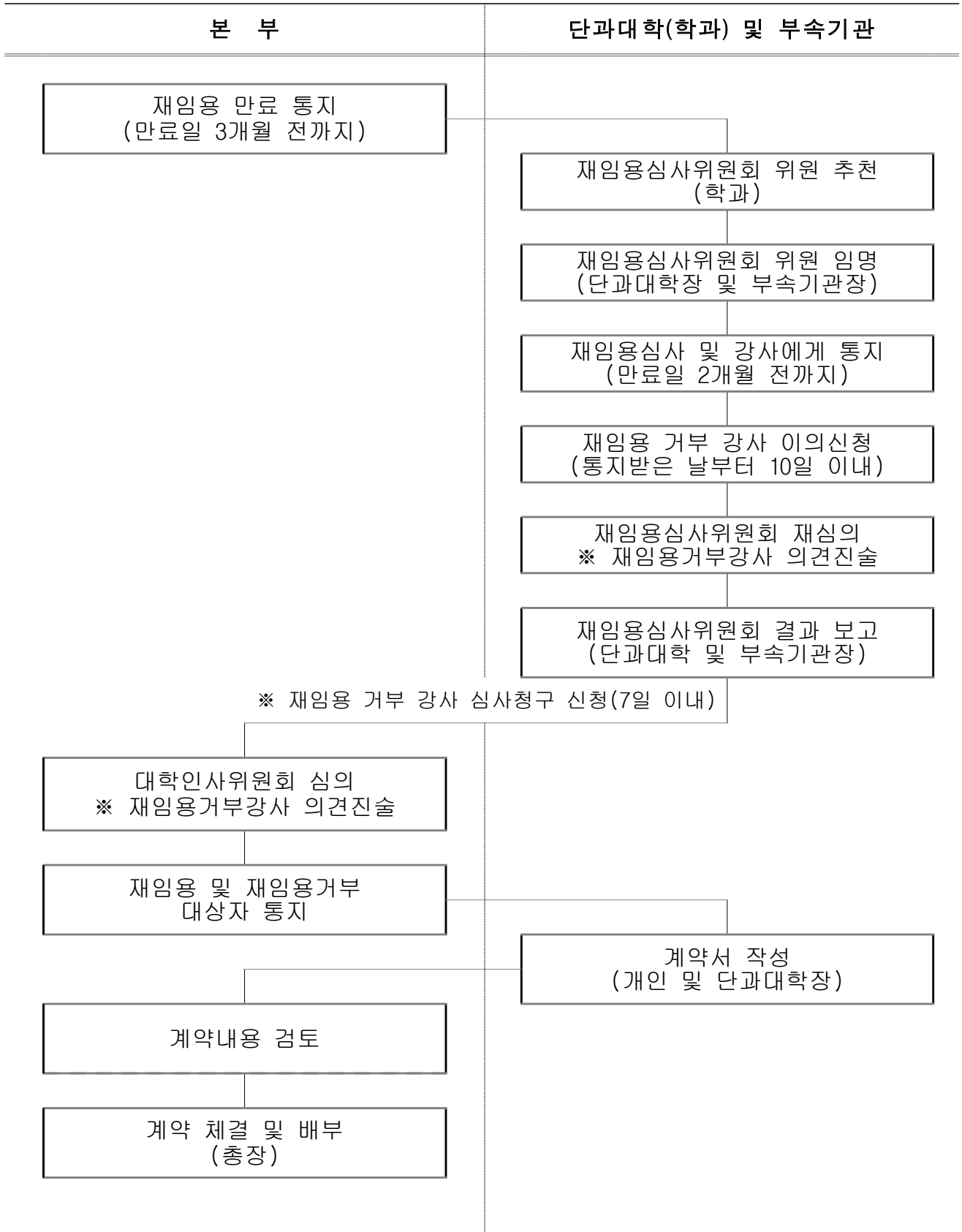
○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소속 학장(부서장)에게 서면(사직서)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퇴직일자는 최종 근무일 다음날로 기재하며,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미포함)

※ 서식1 사직원, 서식 2 보안서약서

## 7. 강사 신규채용 흐름도



## 8. 강사 재임용 흐름도



## 9. 재임용 평가항목

※ 항목별 평가 배점은 (서식7)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참고

항 목	평 가 내 용
수 업 관 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시간, 성적평가 기한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준수 시 1건당 3점 감점</li> <li>※ 휴강에 따른 보강 미준수 1건당 10점 감점</li> </ul> </li> <li>◦ 강의계획(작성)의 적절성 및 수업개선 노력</li> <li>◦ 수업 품질 개선 보고서(CQI)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작성 : 0점</li> <li>※ 기간 미준수시 강좌당 5점 감점</li> </ul> </li> </ul>
강 의 평 가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결과 강의평가의 평점 평균에 따른 평가</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math display="block">\frac{\text{[강의평가 평점 평균 산정]} \times \text{강의한 교과목 강의평가점수의 합}}{\text{강의한 교과목 수}}</math> </div>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 교육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참여(교육당 5점) (폭력예방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청렴교육 등)</li> </ul>
학과(부서)발전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학과(부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부서)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여부 적용</li> </ul> </li> </ul>

## 10. 수업 품질 개선 보고서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 목적: 충북대학교 교육수요자들의 교양, 전공 및 비교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강의평가를 통하여 다음 학기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수업의 질 향상
- 대상: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 평가항목: 교수평가, 학생평가, 강의개선 요청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작성시기: 매년 2월(전년도 2학기 종료 후), 8월(1학기 종료 후)

◦ [개신누리] 로그인 → 메뉴 → 교원서비스 → 수업보고서 → 수업품질개선보고서 → 입력 교과목 선택 → 작성

- CQI 보고서는 외부기관 대학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등으로 활용되므로 필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11. 대학에서 정한 의무교육

- 교육대상: 전임교원, 강사, 비전임교원, 조교
- 교육시기: 교무과에서 별도 안내 공문 시행
- 교육방법: 충북대학교 나라배움터(<http://cbnu.nhi.go.kr>)에서 온라인교육
- 교육과정(매년 이수)

교육과정	인정 시간	교육명	현 행 근 거 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2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 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장애인식 개선교육	1시간	고용노동부와 보건 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폭력예방교육	4시간	평등한 일상, 폭력예 방교육(일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청렴·부패방지· 감질교육·이해 충돌방지교육	1시간	이순신장군의 청렴리 더심,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부패앞에 단호해지기,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법,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 강령 중 택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

## 12. 강사 자을 참여 교육

- 교수법 워크숍
  - 주관: 교육혁신본부 교수학습혁신센터(☎ 261-3610)
  - 교육대상: 전임교원 및 강사
  - 신청방법: 개신누리→교원서비스→개신인재양성→교수지원→교수법 특강신청
- ※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직접 안내



### 13. 강사의 출장 처리

- “출장”이란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강사는 본교 강의(수업) 이외의 복무 및 대외활동에 대하여 출장 승인 대상이 아님

◦ KORUS 로그인 → 교원인사 → 국내출장신청 → 출장 상세정보 등록  
→ 후보강계획 → 확인 → 저장 → 전자결재  
※ 강의(수업) 결·보강 처리에 대해서는 학과 및 단과대학에서 미리 확인 후 출장 처리하시기 바람.

### 14. 사회보험 가입과 퇴직금

- 사회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름  
※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15. 전업·비전업 강사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의 제출

- 임용기간 중 전업·비전업 변경 시, 전업·비전업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학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함
  - 전업강사: 강사 이외의 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
  - 비전업강사: 본직에 종사(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하면서 강사로 출강하는 경우

### 16. 계약기간 만료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

- 대상: 당연퇴직(65세) 및 계약기간 만료 강사 중 이직확인서 발급 희망자  
※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의원면직 강사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 아님
- 내용: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강사는 해당 서식의 피보험자(이직자) 부분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대학)를 경유하여 교무과로 공문으로 제출 (굵은 선 안쪽 부분)  
※ 서식3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17.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및 외부강의 등 신고

- 강사는 ‘교원’ 신분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교직원에게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650, '19.7.30.)
- 외부강의 등 신고
  - 강사가 1회성으로 참여하는 강의 및 회의는 의무 사전신고대상임
    - ※ 2개 이상의 대학에 강사로 임용(계약 체결)되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본연의 업무로 인정)
    - ※ 2개 이상의 대학에 임용된 강사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대학에 외부강의 신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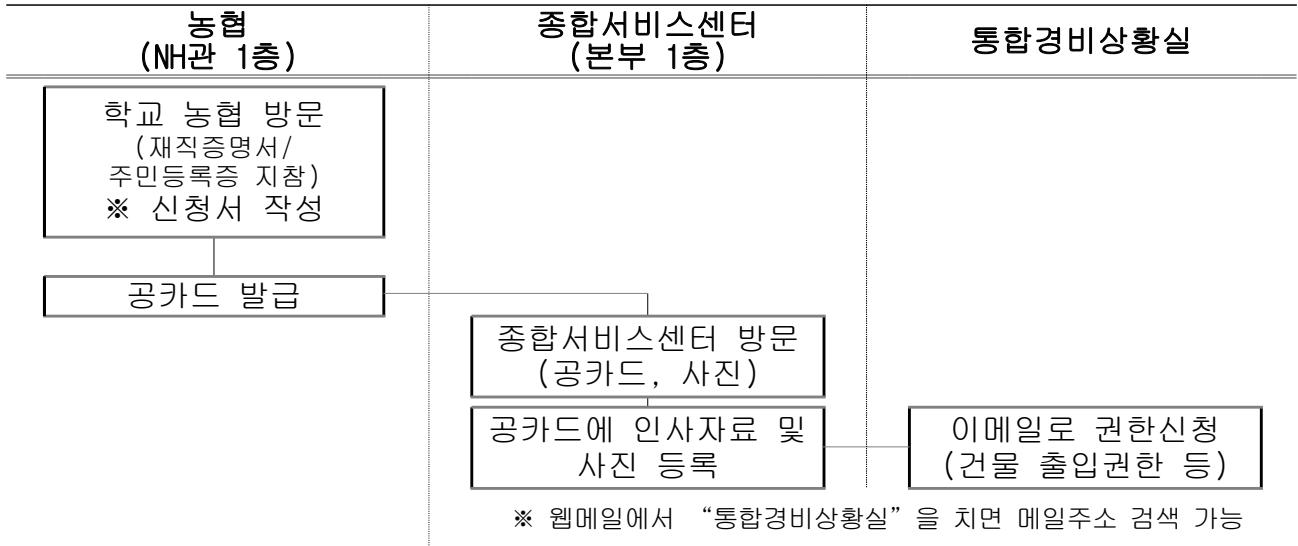
KORUS 로그인 → 교원인사 → 외부강의/회의신고 → 내용 등록 → 사전 승인

## 18. 증명서 발급

발급 방법	세 부 사 항
온 라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증명발급: <a href="http://certi.cbnu.ac.kr">http://certi.cbnu.ac.kr</a></li> <li>○ 개신누리시스템: <a href="http://eis.cbnu.ac.kr">http://eis.cbnu.ac.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무료인터넷증명서 발급</li> </ul> </li> <li>○ 코러스(학내발급): <a href="http://chungbuk.korus.ac.kr">chungbuk.korus.ac.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명서 신청시 ‘온라인 발급’ 선택으로 신청하면 종합서비스센터 승인 후 출력 가능</li> <li>- 학교 용지로 출력 받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 발급’으로 신청하고 종합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수령</li> </ul> </li> <li>○ 코러스 대외서비스(학외발급): <a href="http://chungbuk.korus.kr">chungbuk.korus.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증명서 발급 -&gt; 제증명서 선택</li> <li>- 처음 이용시 회원가입 후 증명발급 가능</li> </ul> </li> </ul>
방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N10) 1층 종합서비스센터(전화:043-261-3308)</li> </ul>
우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신누리 → 증명서 발급 신청 → 익일 특급 우편신청</li> </ul>

※ 종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강의경력증명서

## 19. 신분증 발급 안내



- ※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위해서는 실물카드가 필수이므로, 신분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모바일 신분증” 이용 가능(실물카드 정보가 연계되어 QR정보 인식 가능)
- ※ 의원면직, 임용기간 만료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 이후 신규임용되어 새로운 직원번호가 발급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함

## 20. 정기차량 등록신청

구 분	주 요 내 용
정기등록 (1인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가능차량: 본인, 배우자, 배우자와공동명의, 본인 임대 차량에 한함(가족명의, 가족공동명의 차량은 등록 불가)</li> <li>◦ 주차요금: 월 11,000원(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50% 감면)</li> <li>◦ 신청방법: 대학본부 1층 교통관리실 방문 신청</li> <li>◦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차량 임대 계약서(해당자)</li> <li>◦ 요금납부: 학기단위 별도 납부</li> </ul>
할인주차권 발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시간권: 1대 1,000원</li> <li>◦ 1일권: 1대 2,000원</li> <li>※ 할인주차권의 종류에 구분 없이 출강일수 대비 발급</li> <li>※ 정기등록 이용자는 할인주차권 신청을 할 수 없음 (정기등록과 할인주차권 중 택1)</li> </ul>
일 반 요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30분 600원, 추가 10분당 200원 가산</li> <li>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50% 할인 적용</li> <li>단, 30분 이내 동일 입·출차로 이용시 주차료 면제</li> </ul>
면 제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일요일포함) 08:00 ~ 익일 08:00 방문차량</li> </ul>

## 21. 기타 사항

- 휴직 및 복직 (※ 서식4 휴직원(증빙 첨부), 서식5 복직원)
- 연차휴가 미적용 (15시간 미만 근로자)
- 대학시설(도서관 및 주차시설 등) 이용 가능

## 22. 단과대학(부서)별 강사실 현황

- 강사실 이용에 따른 문의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및 학과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과대학(부서)명	건물명	호실
인문대학	N16-1	216
사회과학대학	N15	232
	N15	261
	N15	264
자연과학대학	S1-2	202A
	S1-4	217
경영대학	N13	107
	N14	304
	N14	311
공과대학	E8-1	224
	E8-6	101
	E8-7	102
전자정보대학	E8-1	436
	E8-7	421
농업생명환경대학	S21-4	126
	S21-5	304
사범대학	E1-2	447
	E1-2	448
	E4-2	102

단과대학(부서)명	건물명	호실
생활과학대학	N18	103
	N18	205
수의과대학	E12-2	203A
약학대학	1관(802)	304
의과대학	E7-1	207-1
	E7-1	215-1
	E7-3	206
융합학과군	S4-2	212
	N16-2	310
법학전문대학원	N16-2	409
	N2	511
교직부	E1-2	237
국제교류본부	N5	205
교양교육본부	N2	711
	N7	405
인문사회강의동	N14	101
합 계	35개실	

※ 「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사업명: 강사처우개선)」에서 강사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예산 지원됨

## 23. 업무 관련 부서별 전화번호

구 분	부서명	전화번호
강사 신규임용 및 재임용	교무과(교원인사2팀)	261-2010, 3806
수업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학사지원과(수업팀)	261-2015
강의평가	학사지원과(수업팀)	261-3819
강사료(전업·비전업)	학사지원과(수업팀)	261-2016
각종 증명서 발급	종합서비스센터	261-3305~3307
정기차량등록	총무과(교통관리)	261-3851

<서식1> [자필로 작성]

# 사 직 원

○○○ 대학 ○○○학과

강사 ○ ○ ○

상기 본인은 ( *사직 사유 기재* ) 으로 인하여  
*0000년 00월 00일자(퇴직 희망일자)*로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원  
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자는 최종 근무일 다음날로 기재할 것.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미포함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 (자필서명)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서식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서식] <개정 2020. 8. 28.>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10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315-83-00467		
	명 칭	충북대학교	전화번호	043-261-2037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			

*피보험자 (이직자)	성 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사일(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구분코드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 기재)  
 (이직사유 구분코드 뒤쪽 참조)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						
		⑤ *임금계산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총 합	
~		⑥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		⑦ * 임금내역	기본급	원	원	원	원	원
~			기타 수당	원	원	원	원	원
~			상여금(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원	
~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12)				원	
~		⑧ 1일 통상임금(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원		
~		⑨ 1일 기준보수(해당되는 사람만 작성)				원		
④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⑩ \*1일 소정 근로시간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⑪ 초단시간 근로일수(해당자만 작성)      이직 전 2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의 총 일수 (      일)

⑫ 기준기간 연장(해당자만 작성) 사유코드: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	사유코드				
	연장기간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제2항(제82조의2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제출)합니다.

제출일      년      월      일

발급자(제출자)       사업장명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서식4〉

# 휴 직 원

○○○ 대학 ○○○학과

강사 ○ ○ ○

본인은 「충북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휴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명: \_\_\_\_\_ 휴직)

휴직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작성자 : (자필서명)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증빙서류

질병휴직: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육아휴직: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복 직 원

○○○ 대학 ○○○학과

강사 ○ ○ ○

본인은 「충북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휴직하였으나, 그 사유가 소멸되어 20 년 월 일자로 복직을 희망하며, 이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자필서명)

충북대학교총장 귀하

※ 증빙서류  
질병휴직: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 완쾌여부 확인되었다는 증빙

## <서식6>

# 강사 초과 강의 허용 신청서

### 1. 인적사항

소속학과	직명	직원번호	성명
	강사		

### 2. 강의 배정 현황

개설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분반	교과목명	학점	주당시간
	전공선택				- -	
					-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충북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6시간 원칙.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9시간까지 가능

### 3. 초과 배정 요청 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분반	교과목명	학점	주당시간	당초 교과목 담당교원
				- -		(예시) 미정 or 홍길동

### 4. 초과 강의 허용 요청 사유

※ 다음의 사유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및 작성하세요.

<input type="checkbox"/>	1강좌의 담당 강의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실험·실습 과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교과목 관련 분야 신규 강사 채용 불가로 기존 강사 활용하고자 함
<input type="checkbox"/>	당초 강의배정 교원의 사직 등의 교수자 부재로 기존 강사 활용하고자 함
부재사유 (해당항목 체크 및 작성)	<input type="checkbox"/> 강사 사직(해당 교원: )
	<input type="checkbox"/> 전임교원 연구년제 연구교수 수행(해당 교원: )
	<input type="checkbox"/> 전공분야 전임교원 보직수행(해당 교원: )
	<input type="checkbox"/> 전임교원 휴직(해당 교원: )
	<input type="checkbox"/> 전임교원 사직(해당 교원: )
<input type="checkbox"/>	강사(초빙교원 등) 임기만료 퇴직(해당교원: )
<input type="checkbox"/>	퇴직예정교원(1년미만)의 강의감면으로 인한 초과 강의 (퇴직예정교원: )
<input type="checkbox"/>	기타사유:

「충북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초과 강의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강사 (서명/인)

○○학과장 (서명/인)

<서식7>

##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학과	성명	생년월일	평가결과(√표기)
			적합 <input type="checkbox"/> ,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평가 항목	항목배점	배점한도	평가결과
수업시간, 성적평가 기한 준수 ※ 미준수 시 1건당 3점 감점 ※ 휴강에 따른 보강 미준수 1건당 10점 감점		20점	
강의계획(작성)의 적절성 및 수업개선 노력		15점	
수업품질 개선보고서(CQI) 작성 ※ 미작성 : 0점 ※ 기간 미준수시 강좌당 5점 감점		15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강의평가 평점 평균 산정]  <math display="block">\frac{\text{강의한 교과목 강의평가점수의 합}}{\text{강의한 교과목 수}}</math> </div> 강의평가 평점 평균 4.5 이상 강의평가 평점 평균 4.0 이상 4.5 미만 강의평가 평점 평균 3.5 이상 4.0 미만 강의평가 평점 평균 3.5 미만	30점 20점 15점 5점	30점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참여: 교육당 5점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청렴교육 등)		20점	
학과·부서 발전기여도 가점 (실적 미제출시 0점)	0 / 5 / 10		
<b>합계</b>		<b>100점</b>	

- 1) 평가결과: 평가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으로 판정
- 2) 강의평가점수: 임용기간 중 최근 3년 이내(임용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강사로 임용된 기간)의 평가결과 적용
  - 평가 제외대상: 계절수업, 평가일까지 강의평가 점수가 완료되지 않은 학기
  - 임용 1년차 기간 중에 폐강 등으로 강의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는 “30점” 부여
- 3) 학과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간의 합의로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할 수 있음.
- 4)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재임용이 가능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 ○ ○ (서명)

# 충북대학교 강사 안내 자료

---

발행일: 2022년 9월

발행처: 충북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개신동)  
Tel. (043) 261-2010 Fax. (043) 261-3181  
<http://www.chungbuk.ac.kr>

---